

# 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

**거창군의회**  
[총무위원회]

# 목 차

-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[ 재 무 과 ] 1
-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[ 재 무 과 ] 5

##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24. 4. 23.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. 4. 5.

나. 제출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4. 4. 5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 
(2024. 4. 17.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동복]

#### ① 거창법조타운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

가. 제안이유

- 거창구치소 주민투표시 현대아파트 등 인근 주차장 부족으로 인센티브 추진 사업
- 법조타운과 인근 공동주택과 초·중·고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에 의한 유동인구 증가 예상 및 도로 등 교통인프라 부족
- 주차공간 공급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만족도 증가 및 교통복지 실현

나. 주요내용

1) 취득개요

- 위 치: 거창읍 가지리 일원

- 사업명: 거창법조타운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
- 사업기간: 2024. 1. ~ 2025. 12. (2년)
- 총사업비: 45억원(전환도비 20, 군비 20, 특교5)
  - 2024년도 예산 : 25억원(전환도비 10, 군비 10, 특교 5)
- 사업규모: 7,850㎡(2,300평) 정도
  - 부지매입: 6,848㎡(2,071평) 정도 / **【취득재산 불임】**
- 사업내용: 공영주차장 조성 1식(주차면수 190면 정도)

2) 취득재산 세부내역 : 16필지, 6,848㎡(2,071평) / **【불임1】** 참조

### 3) 추진경과

- 2015. 11.: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착공
- 2019. 10.: 주민투표 / 투표율 52.8%, 찬성 64.7%, 공사 재착수
- 2020. 5.: 인센티브 확보 공동대응 법조타운 조성 민·관 협의회 구성
- 2020. 7.: 법무부 교정본부 방문 주민편의시설 조성 인센티브 건의
- 2021. 4.: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계획 수립
- 2022. 3.: 2022년 1차 특별교부세 30억원 신청(5억 교부결정)
- 2022. 8.: 경남도 예산담당관실 방문 예산 건의
- 2022. 9.: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 건의
- 2022. 10.: 2022년 3차 특별교부세 신청 국회의원실 방문
- 2023. 1.: 거창구치소 준공
- 2023. 1.: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 거창군 내방 시 재정 건의
- 2023. 6.: 경남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전환도비 신청
- 2023. 7.: 경남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관련 현장평가
- 2023. 10.: 한동훈 법무부장관 구치소 개청식 참석 시 재정 건의
- 2023. 11.: 경남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전환도비 10억원 확정내시
- 2023. 11.: 김태호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20억원 재정 건의

- 2023. 11.: 경남도 행정부지사 방문 특별교부세 20억원 재정 건의
- 2023. 12.: 행정안전부 방문 갈등해결 인센티브 20억원 재정 건의
- 2024. 1.: 법조타운 인근 업무추진 관련부서 대책회의(군수님 주재)
- 2024. 2.: 경남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전환도비 교부

#### 4) 향후계획

- 2024. 4.: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(20억원) 편성
- 2024. 4.: 문화재 영향검토,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용역 추진
- 2025. 1.: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행

#### 5) 기대효과

- 주택가 주민들의 도로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안전한 교통행정 실현
- 주차공간 신규 공급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만족도 증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- 본 사업을 위해 취득하려는 토지는 거창읍 가지리 일원 16필지, 6,848㎡로, 기준가격은 4억 2천여만원임.
- 해당 토지 주변은 공동주택과 초·중·고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지난해 10월 거창구치소 개청과 함께 거창보호관찰소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으로 올 연말에는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부지조성이 완료될 계획임.
- 또한, 최근 912세대의 신규 아파트까지 들어서면서 향후 유동 인구 증가와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주차 공간을 공급하여 주택가 주민들의 이면도로 불법 주·정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4. 4. 23.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. 4. 5.

나. 제출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4. 4. 5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 
(2024. 4. 23.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동복]

가. 제안이유

-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‘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’으로 추가하여 변경 고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고시지역: 2024. 1. 10. 현재 관내 도시지역으로결정·고시된 지역

나. 대상면적: 32.21km<sup>2</sup>

다. 읍면동별 적용대상지역

읍면동	면적(m <sup>2</sup> )	적용대상지역
합계	32,210,186	거창읍·응양면·마리면·남상면·가조면 일부지역
거창읍	26,767,975	상림리·중앙리·대동리·대평리·김천리·송정리·장팔리·정장리·동변리·서변리·가지리·양평리·학리 일부지역
응양면	2,773,000	죽림리·동호리·산포리·노현리 일부지역
마리면	455,000	하고리 일부지역
남상면	1,320,476	대산리·월평리 일부지역
가조면	893,735	대초리·일부리·마상리·수월리 일부지역

라. 고시면적 변경 내역 (단위 : m<sup>2</sup>)

금회 고시면적 (2024. 1. 10. 기준)	기 고시면적 (거창군고시 제2019-42호)	증가면적
32,210,186	31,906,464	(증) 303,722

마. 고시면적 변경 사유

- 남상면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(계획관리지역, 농림지역 → 일반공업지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-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‘도시 계획구역’에 부과되며, 우리군은 거창읍과 4개 면지역 31.91km<sup>2</sup>가 도시지역으로 결정·고시되어 있었으나
-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47번지 일원인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내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0.3km<sup>2</sup>가 추가되어 2024. 1. 10. 기준 도시지역 면적은 32.21km<sup>2</sup>가 됨.

※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[경상남도 고시 제2022-689호]

-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내의 기반시설의 신설,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대해서 0.14% 세율로 적용되고 있음.
- 도로, 상하수도 등의 설비, 공원이나 녹지 등 도시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시설들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부과 시 도시지역 변경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**

**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

**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